

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83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5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○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과 같이 제안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7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,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, 지난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시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현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“별표1”과 같이 인상함

4. 개정조례안

○ 별 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생략
- 예산조치 : 일부 미확보(부족 예상분 차기추경예산에 확보)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1”의 “숙박비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숙 박 비(1야당)
의 장	46,000
부 의 장	
의 원	25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1]

(단위 : 원)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· 부의장	1등급	생략	생략	생략	생략	<u>41,000</u>	생략	의장· 부의장	현	행	과	같	음	<u>46,000</u>	현행과 같음
의 원	2등급	생략	생략	생략	생략	<u>22,000</u>	생략	의 원	현	행	과	같	음	<u>25,000</u>	현행과 같음